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2. 12. 3.

##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02년 10월 31일

다. 상정 일자

○ 제207회 정례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2. 12. 3) 상정, 질의답변,  
수정 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박 경 국)

가. 제안 이유

-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와 첨단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은 첨단기술과 산업의 선점이 그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성장 동력원이 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미래유망 핵심전략 첨단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원 및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 과제공모 사업등에 보조, 출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은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신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사항 등에 대한 자문으로 함 (제4조)
-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로 구성함 (제5조제1항)
- 전체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2항)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15인 이내로 구성함 (제5조제3항)
- 위원은 첨단산업 관련공무원 및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제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함 (제5조제4항)
-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함 (제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 옹 회)

-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의 선점을 위한 시의성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 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호에 첨단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매5년마다 첨단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별개 조항으로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2조의 첨단산업지원사업 각호중 6호의 '전시지원사업'에 대하여 문구의 설명이 필요하며
- 제5조 1항의 첨단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3항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수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최대 상한인원을 정한 것으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취지인 것이나 위원선임과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수행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회의 위원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제5조 4항의 위원은 첨단산업 관련 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호의 자'는 같은항의 1~3의 각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만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석상 문제가 있고, 각호중 어느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필요충분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 바 '각호의 1'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동조 제4항의 취지로 보아 위원회 위촉대상자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제관련기관단체 재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의 참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동조 4항 3호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자'를 '관련분야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자 또는 경험자'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핵심전략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취지로 볼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수정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 충청북도지사제출
-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수정동의
-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수정안
- ◎ 수정안대비표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정이유

-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와 첨단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은 첨단기술과 산업의 선점이 그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성장 동력원이 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미래유망 핵심전략 첨단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원 및 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과제공모 사업 등에 보조, 출연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은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 사항, 신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사항 등에 대한 자문으로 함 (제4조)

-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로 구성함 (제5조제1항)
- 전체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2항)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15인 이내로 구성 함 (제5조제3항)
- 위원은 첨단산업 관련공무원 및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함 (제5조제4항)
-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함 (제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11조)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은 폐지 함 (부칙 제2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산업을 충청북도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집중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지원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등 벤처창업 지원
3. 첨단제품기술 산업화 및 첨단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 첨단산업관련 창업보육,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5. 첨단기술 인력확보, 대학내 기술특화연구사업, 제품인증 사업
6. 세미나, 해외 교류·시장 진출사업, 전시지원사업 등

제3조(위원회 설치)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2. 첨단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4.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사항
6.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이를 전체위원회라 칭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수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④위원은 첨단산업 관련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3.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첨단산업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규정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충청북도생물산업연구단은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중소기업기술촉진법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尖端技術 및 製品의 範圍

분 야	범 위
전기전자 및 정보분야	<p>&lt;전자·정보부문&gt;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 정보서비스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컴퓨터·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반도체, 계측·제어기기, 영상·음향·결상·전송기기, 입체영상 디스플레이(3D Display) 및 전용부품</p> <p>&lt;전기부문&gt; 345KV이상 송·변전설비, 통신 및 전력케이블, 열처리용기기, 자동·감시제어반과 동 부품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기기,</p> <p>&lt;전자·전기부품 및 재료부문&gt;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핵심부품, 칩부품, 영상·음향·결상기기 전용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통신기기 관련 부품, 광·자기 기록매체 및 고기능 트랜스포머, 인쇄기록장치 전용부품 및 인쇄 회로기판, 센서류·Actuator 및 전하결합소자(CCD), 정밀모터, 고성능전지</p>
정밀기계·신공정분야	<p>발전기 및 발전설비, 섬유기계 및 부품, 플라스틱 가공기계, 읍셋 인쇄기, 수치제어공작기계, 산업 및 농업용 로봇, 고기능프레스, 수치제어식 기계 핵심부품, 계측·계량기기, 베어링, 절삭공구, 컴퓨터에 의한 통합자동화시스템(CIM) 및 유연생산시스템(FMS), 냉동공조기기, 유공압기기 및 진공장치, 금형, 손목시계용 무브먼트, 워터젯트 절단장치, 방직·봉제·염색가공의 자동화 응용기술</p>
재료·소재 분야	<p>고기능성 금속재료, 신제련·정련기술 및 신주조·압연기술, 유가 금속 회수 및 재활용기술, 첨단 표면처리기술 및 장치, 고기능성 부여 섬유·염색가공 및 나염기술, 고기능성 세라믹스, 고분자 재료 및 소재, 고기능성 신소재,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p>
신물질·생물 공학분야	<p>특수기능성 첨가제 및 계면활성제, 정밀화학원제, 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정밀화학 제품, 생물공학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 생물공학을 이용한 환경보전제품 및 환경처리기술</p>

분 야	범 위
광학·의료 기기분야	레이저 및 관련기기·부품, 결상기기, 광소재 및 핵심부품, 전자의료기기
항공기· 수송분야	<p>&lt;항공우주부문&gt; 항공기 및 기기류, 우주비행체 및 기기류, 지원방비</p> <p>&lt;자동차·농업기계·건설기계 부문&gt; 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현가·제동·조향장치,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냉·난방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 및 차체시스템</p> <p>&lt;철도차량 부문&gt; 철도차량 및 부품</p> <p>&lt;엘리베이터 부문&gt; 속도제어장치 및 구동장치, 초고속 엘리베이터,</p> <p>&lt;조선·해양부문&gt; 고부가가치선박, 잠수정, 탐사선, 운항관제기술</p> <p>&lt;조선기자재 부문&gt; 엔진 및 엔진 주요기능부품, 극저온액화탱크용 양하역설비와 제어시스템, 극저온액화탱크 배관용 기기와 보냉설비, 프로펠러, 자동항법, 자동제어 및 계측·조절장치</p> <p>&lt;타이어부문&gt; 저편형, 고성능 고강도 타이어</p>
환경·에너지 자원분야	환경설비, 환경오염방지기술, 청정기술(청정생산기술), 환경보존 기술, 원자력기술, 송전·배전기술, 청정에너지 및 발전기술, 광산개발 및 탐사기술
물류·유통 분야	수송관리·운영기술, 보관관리기술, 하역·운반기술, 물류정보기기·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물류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섬유디자인 및 의류패션, 기술용역, 안전성/유해성 평가기법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출년월일 : 2002. 12. 3.

제 출 자 : 정 윤 숙 의원

### 1. 수정이유

- 첨단산업 육성 전략의 미래예측과 체계화를 위해 도지사는 매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위원수를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함  
또한 위원회 선임자격을 완화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 안 제2조 제6호의 “전시지원사업”을 “홍보지원사업”으로 개정함
- 안 제4조 제1호의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을 “첨단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 안 제4조 제6호의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기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사항 등”으로 개정함.
- 안 제5조 제4항의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함.
- 안 제5조 제4항 3호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관련분야 기관, 단체, 기업의 재직자 또는 유경험자”로 개정함
- 안 제11조 “규정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를 “시행에”로 한다.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6호의 “전시지원사업”을 “홍보지원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호의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을 “첨단 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4조 제6호의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기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사항 등”으로 한다.

안 제5조 제4항의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안 제5조 제4항 3호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관련분야 기관, 단체, 기업의 재직자 또는 유경험자”로 한다.

안 제11조 “규정의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를 “시행에”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첨단산업 지원 등) ----- -----.</p> <p>1. ----- 2. ----- 3. ----- 4. ----- 5. ----- 6. -----, <u>전시지원사업</u> --</p>	<p>제2조(첨단산업 지원 등) ----- -----.</p> <p>1. ----- 2. ----- 3. ----- 4. ----- 5. ----- 6. -----, <u>홍보지원사업</u> --</p>
<p>제4조(기능) -----.</p> <p>1. <u>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 사항</u> 2. ----- 3. ----- 4. ----- 5. ----- 6. <u>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u></p>	<p>제4조(기능) -----.</p> <p>1. <u>첨단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u> 2. ----- 3. ----- 4. ----- 5. ----- 6. <u>기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u></p>
<p>제5조(구성) ①----- -----.</p> <p>② ----- -----.</p> <p>③ ----- -----.</p>	<p>제5조(구성) ①----- -----.</p> <p>② ----- -----.</p> <p>③ ----- -----.</p>

원 안	수 정 안
<p>④ ----- ---- 다음 각호의 자 ----- ----- 1. ----- 2. ----- 3. <u>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u> <u>는 자</u></p> <p>제11조(시행규칙) ---- <u>규정의의 분과위원</u> <u>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u> -----.</p>	<p>④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1. ----- 2. ----- 3. <u>관련분야 기관, 단체, 기업의 재직자</u> <u>또는 유경험자</u></p> <p>제11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